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82 발의연월일: 2022. 9. 28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황보승희 · 정운천

성일종・金炳旭・이채익

양금희 · 지성호 · 김학용

전주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.

하지만,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,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, 수집된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, 이를 활용한 감염병방역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4.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3조의4제2항제3호 중 "예방접종 피해보상"을 "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,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, 예방접종 피해보상"으로 한다.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예방"을 "예방·관리"로, "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"를 "감염병환자등,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1조의 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

제76조의2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예방"을 각각 "예방·관리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예방"을 "예방·관리"로 한다.

다만, 제76조의3에 따른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를 위하여 제2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주체에 대한 통지는 질병관 리청장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를 각각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로 하고,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3(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)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

- 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6조의2제1항의 정보 및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다.
- 1.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 관련 정보
- 2.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
- 3.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
- 4.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
- 5. 그 밖에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의4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	제33조의4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
템의 구축・운영 등) ① (생	템의 구축・운영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	②
스템을 구축・운영하기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 • 관	
리 · 보유할 수 있으며, 관련 기	
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	
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	
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	
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	
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	3
설 정보, 예방접종 피해보상	예방접종 후 이상반
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	응 신고, 예방접종에 관한 역
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	학조사, 예방접종 피해보상
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자료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	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
보 확인 등) ① 질병관리청장	보 확인 등) ①
또는 시·도지사는 감염병 <u>예</u>	

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 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(「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, 의료기관 및 약국, 법인·단체·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 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감염병환자등, 감염병의
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-
1.・2. (현행과 같음)
2 「구미거가ㅂ허버, 제5조이

3. '폭민건강모임법」 제5소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 수급 권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1조의 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

<u>4. · 5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

<u>3.·4.</u> (생 략)

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감 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경찰청,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(이하 이 조에서 "경 찰관서"라 한다)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관리청 장.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 수 · 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 관서의 장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제15 조 및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 조에도 불구하고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|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 보사업자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 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

包 一
②
예방·관리

7101

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.

-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, 국민건강보험공 단 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 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(이하 "보건의료기관"이라 한다)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.
-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 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 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 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

3
,
<u>예방·관리</u>
예방 • 관리
<u>예방·관리</u>
<u>예방·관리</u> ④

된 정보로 한정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⑤ ⑥ (생략)
-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단 선 신설>

- 1. 감염병 <u>예방</u>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
- 2. · 3. (생략)
- ⑧・⑨ (생략)
- <u><신 설></u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
76조의3에 따른 감염병 정보의
분석 및 연구를 위하여 제2호의
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
의 주체에 대한 통지는 질병관
리청장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
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
갈음할 수 있다.
1 <u>예방·관리</u>
2.・3. (현행과 같음)
⑧・⑨ (현행과 같음)
게76조의3(감염병 정보의 분석
및 연구) 질병관리청장은 감염
병 예방・관리 및 감염 전파의
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

76조의2제1항의 정보 및 다음

각 호의 정보를 분석 및 연구

할 수 있다.

- 1.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 고 관련 정보
- 2.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
- 3.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 보
- 4.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
- 5. 그 밖에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 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 청장이 정하는 정보

<u>제76조의4</u>(준용규정) (현행 제76 조의3과 같음)

<u>제76조의5(</u>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(현행 제76조의4와 같음)

<u>제76조의3</u>(준용규정) (생 략)

<u>제76조의4(</u>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(생 략)